

# 「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2012. 6. 22.(금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정지숙 의원 외 6명
- 나. 발의일자 : 2012년 6월 4일
- 다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5일
- 라. 상정일자 : 2012년 6월 19일

(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)

### 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정지숙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충청북도 청사부설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문 신설과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감면조항 신설
  -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북도민의 차량  
→ 「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신설
  -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연병호)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「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북도민에게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하고,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도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
타 조례 제정에 따른 조문 신설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의 차량
8.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 차량
9.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 ① (생략)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7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<u>각종 행사 등에 동원된 차량 및 방문차량으로 사전 통보된 차량</u></p> 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의 차량</u></p> <p>8. <u>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 차량</u></p> <p>9. 그 밖에 도지사가 <u>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</u></p> <p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